

2. 시민안전체험관 개관

화성씨랜드, 인천호프집 화재등 대형참사 현장에서 안전대처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희생이 날로 증가되어 청소년과 시민들이 직접 지진·화재 등 가상재난을 경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체험관을 국내 최초로 건립함

□ 사업개요

- 위 치 :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정문 주차장 옆
- 규 모 : 지하1층·지상3층, 연6,142㎡
- 총사업비 : 20,549백만원
- 기 간 : 2001. 12월 ~ 2002. 12월(12개월)
- 체험시설 : 화재, 붕괴, 지진체험 등 20여종

□ 추진상황

- 2000.7.20 : 건립기본계획(市방침 제744호)
- 2001.5.11 : 적격업체 선정(현대산업개발)
- 2001.12.6 : 공사 착공
- 2002.12.5 : 준 공
- 2003.1.11 : 인 수
- 2003.1.15~2.3 : 체험관운영조례 입법예고
- 2003.1.27 : 시범운영 개시
- ※ 체험대상 : 학생·일반시민 등(200~600명/1일)

□ 향후 추진계획

- 2003. 3월초 : 개관식
- ※ 개관후 운영
  - 휴 관 일 :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1월 2일
  - 체험시간 : 10:00 ~ 17:00
  - 체험방법 : 예약을 통한 단체체험

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

- 서울특별시장

2. 제안이유

-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재해재난 관련기금을 통합운영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,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기금의 설치근거와 재해대책기금, 재해구호기금, 재난관리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(안 제2조제3조)
- 나.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한 적립금과 각 계정의 자금운용수익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함(안 제4조)
- 다. 기금은 기금설치의 근거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함(안 제5조)
- 라. 기금관리를 위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둠(안 제6조)
  - 기금운용관 : 재해계정-건설국장, 구호계정-보건복지국장, 재난계정-소방방재본부장
  - 기금출납원 : 각 계정의 기금업무 담당사무관

마.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계정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바. 재산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대출금의 이자율, 상환기관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금 이율과 시중금리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9조)

4. 검토요지

가. 조례제정 목적

현행 재해관련 각종 기금은

-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(행정자치부)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(행정자치부)
-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(보건복지부)에

각각 근거하고 있어 별도조례를 만들어 기금을 운용관리해 왔으나 현 기금의 종류가 18개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기금 축소방안에 따라 3개의 별도기금을 하나의 “재해재난기금”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문제점

- 기금운영관이 각 계정별로 소방방재본부장, 건설국장, 보건복지국장으로 분산되어 있어 조례개정안 및 기금승인, 행정사무감사시 주무부서가 없고,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으며 현행 재난관리기금(소방방재본부장), 재해관리기금(건설국장), 재해구호기금(보건복지국장)은 그 법적근거와 관리운용주체가 모두 다르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,

굳이 기금을 통합 운용할 경우에도 “공무원시상기금”처럼 공무원교육원 계정 및 소방학교 계정의 2개의 계정을 두고 집행을 각각 계정부서인 교육원과 소방학교에서 관리하나, 기금운용 및 관리의 종합적 책임부서는 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고 있고 의회에 출석·답변감사도 교육원장이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, 본 조례안은 운용 및 관리에 대한 통합부서 없이 오직 계정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질 부서가 없음.

한편, 기금통합관리의 목적으로 몇 개의 유사기금을 묶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고는 하나 이미 서울시는 지난 12월 초에 2조 3천억원에 이르는 기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하나은행 직원을 기획예산실에 특채하여 본 조례의 제정과 관계없이 모든 기금을 한사람이 통합운용토록 함으로써 본 조례안처럼 3개 기금조례를 1개의 기금조례로 통합하더라도 본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 기금운용은 하지 않을 것이며, 결국 조례제정은 현행기금(18개) 숫자만 줄어드는데 그치고 있음.

다. 제23회 정례회때 기금승인과 본 조례와의 문제점

- 지난 제23회 정례회때 제출 승인된 “재해재난대책기금”은 본 조례가 의결될 것을 전제하여 편성한 것으로, 만약 본 조례가 의결되지 않을 경우 기 승인된 기금은 현행 조례대로 각 실국별로 관리운용할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함.

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1호 중 “건설국장”을 “건설기획국장”으로 하고 “보건복지국장”을 “복지여성국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)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의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